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성 주 군 수

2.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감면기한이 2017.12.31.로 일몰된 조항 중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일몰된 감면 기한 연장(2020.12.31.까지 3년 연장) : 3개 조문

-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4조)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안 제5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10조)

- 자동이체 방식을 계좌에서 신용카드까지 확대, 전자송달 방식만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공제토록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기획감사실-1747('18.2.28)〕

라. 성별영향평가 분석 : 개선사항 없음〔주민복지과-13070('18.3.2)〕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기간 : '18.3.2~ '18.3.22〕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 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 지방세 납부 및 고지서 송달에 있어 납세편의 제공 및 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 문화재,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이 2017. 12.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2020. 12. 31까지 3년간 연장하고 지방세 납부에 있어 기존의 계좌 자동이체에서 신용카드 자동이체까지 확대 시행하며, 고지서 송달에 있어서 전자송달 방식을 신청한 경우에 세액 150원을 공제해 주기 위함입니다.

○ 법리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서민생활 지원 및 효율적인 세정 운영 등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